

제29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0.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1일

전문위원 장 석 현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100
- 나. 발 의 자: 김민석 의원 외 6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10월 6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0월 11일

2.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시행 2022. 6. 16.) 제정·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회계 관리 책임, 지도·감독 및 환수 규정 마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스포츠클럽법」 제3조, 제15조 제1항~제3항,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 제10조

나. 협조부서 :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2022. 10. 6. ~ 2022. 10. 12.)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스포츠클럽법」 제정·시행(2022. 6. 16.)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¹⁾로 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를 통하여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이란 법인 또는 단체로써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것을 뜻하며, “공공체육시설”은 구에서 관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1)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설(참고자료1 참조)로 구체화하여 공공체육시설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2)에 따라 구청장은 공익 목적으로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스포츠클럽 비교 구분

구분	등록클럽	지정클럽
대상	모든 체육활동 단체(법인포함)	등록 스포츠클럽 中
최종권한	구청장 (등록증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스포츠클럽 지정)
권한의 위임·위탁	자치구 체육회 (서류심사·검토)	대한체육회 (서류접수·심사)
관련조항	스포츠클럽법 제6조	스포츠클럽법 제9조
신청주기	월 1회, 매월 14~16일까지(3일간)	연 1회

2)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 안 제3조 제4항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위탁운영 규정을 일원화 함
- 안 제3조 제5항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³⁾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할인규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는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시함

3)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스포츠클럽⁴⁾에 대한 구의 책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2022. 6. 16.)되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고 구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공익 목적 여부, 기존 대행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위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또한 기존 이용자 및 체육단체와의 형평성 및 공단 수익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강서구 등록된 스포츠클럽 : 없음 (2022. 10. 19. 기준)

참고1**강서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

명 칭	위 치
강서개화축구장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27-1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강서구 화곡동 산60-1
구립 테니스장	강서구 방화동 36-14
우장근린공원 테니스장	강서구 화곡동 산60-1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구 화곡로65길 62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강서구 송정로 45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강서구 양천로 251
마곡레포츠센터	강서구 양천로 251
가양레포츠센터	강서구 양천로61길 101
수명산다목적체육관	강서구 내발산동 748
공산다목적체육관	강서구 마곡동 산3
화곡배수지다목적체육관	강서구 화곡동 산22-80
강서다목적체육관	강서구 화곡동 산22-32

□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체육센터 및 수영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2회 이하의 체육행사
3.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에 한해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50퍼센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10명 이상 단체는 30퍼센트
3.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골드카드)을 가진 사람은 30퍼센트

4. 그린카드(또는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가진 사람은 5퍼센트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6.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퍼센트
 8. 삭제 (2020.11.18.)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
- ④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서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를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은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